

부속서 II

니카라과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니카라과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기존의 공기업이 보유한 어떠한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을 제한하여 니카라과 국민만이 그러한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전술한 절은 그러한 지분의 최초 양도 또는 처분에만 적용된다. 니카라과는 그러한 지분의 후속적인 양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이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다.</p> <p>니카라과는 지분소유권에 대한 제한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전술한 항에 명시된 어떠한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으로 창설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니카라과는 또한 그러한 새로운 기업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 분야	소수집단에 관한 사항 및 원주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 및 원주민에게 권리 또는 선호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커뮤니케이션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54호 (1995.8.18)</p> <p>법령 제19-96호, 법률 제200호 통신 및 우편 서비스 일반법에 관한 규정(Decreto No. 19-96, Reglamento de la Ley No. 200,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y Servicios Postales), 관보 제177호 (1996.9.19)</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및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전자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니카라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니카라과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 또는</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사안</p>

5. 분야	연안토지, 섬 및 강둑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p><u>투자</u></p> <p>니카라과는 니카라과의 소유 하에 있는 연안토지, 섬 및 강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6.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실업 보험, 사회 보험 및 보장,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 훈련, 보건 및 보육.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중소기업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니카라과는 중소기업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우편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758호, 니카라과 우편 및 우편서비스 일반법(Ley No. 758, Ley de Correos y Servicios Postales de Nicaragua), 관보 제96호 및 제 97호(2011.5.26 및 2011.5.27)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우편서비스, 국제우편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행위 및 국제기구 내 니카라과의 대표는 정부가 임명한 운영자인 니카라과 우정국 (Correos de Nicaragua)에 유보된다.</p>

9.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전기 발전, 배전 및 상업화 분야의 모든 회사에 대한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화석연료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니카라과 공화국 정치 헌법 및 그 개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Nicaragua y sus reformas), 관보 제32호(2014.2.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니카라과는 화석연료의 연구, 이용 및 그 공급 분야의 모든 회사에 대한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